

2016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16. 9. 30.)

업 무 보 고



병무청

보 고 순 서

I . 일반현황	1
II . 주요업무 현황	9
III . 현안사항	17
IV . '15년도 국정감사결과 조치사항 ..	27
V . 맺 음 말	41

I. 일 반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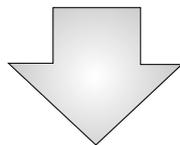
- 연 령
- 임 무 및 기 능
- 조 직 및 정 원
- '16년 세출예산 현황
- 병역의무자 관리현황

연 혁

국 방 부

- 국방부 제1국 '48. 12. 7.
- 육본 예하 병사구사령부 '49. 9. 1.
- 징집-국방부, 소집-내무부(이원화) '53. 9. 15.
- 국방부(징·소집 일원화) '54. 9. 1.
- 2군 예하 병사구사령부 '55. 2. 1.
- 시·도 병무청(국방부 직할) '62. 10. 1.

창설 전 병무행정 담당기구
(11회 변경)



병 무 청 ('70. 8. 20.)

임무 및 기능

□ 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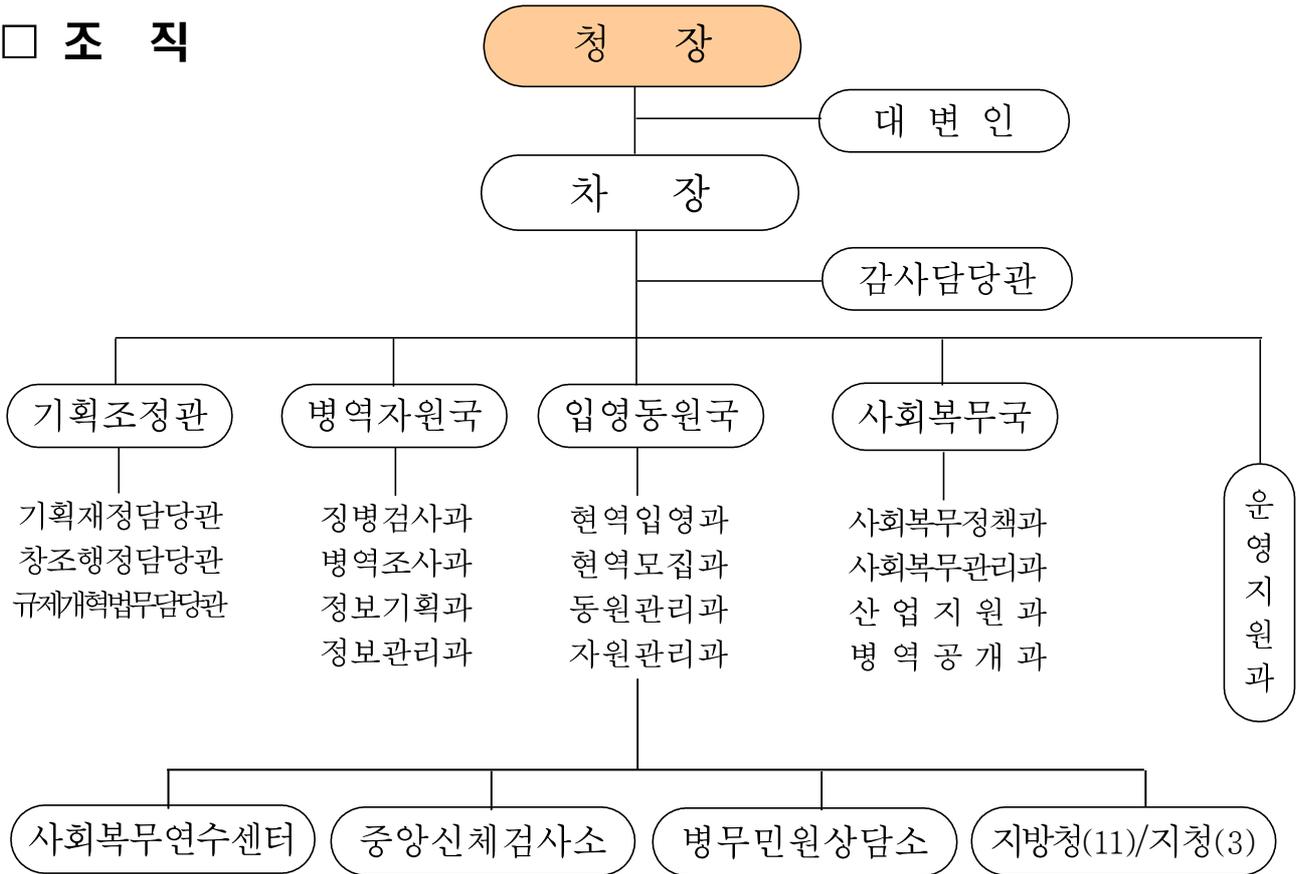
- 징집/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
- 병역의무자 관리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

□ 기 능

- 징병검사
- 현역병 입영
- 사회복지무요원 소집 및 관리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관리
- 향토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소집
- 병역사항 공개

조직 및 정원

□ 조 직



○ 본 청 : 1관 3국, 1대변인, 4담당관, 13과

○ 소속기관 :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신체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11), 병무지청(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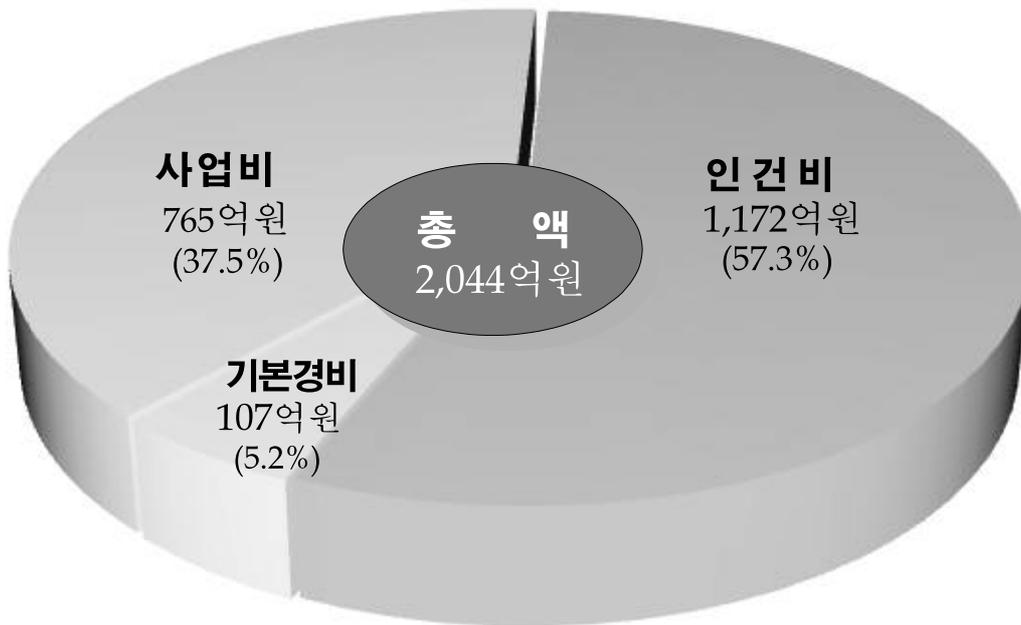
□ 정 원

('16. 8. 31.현재, 명)

계	본 청	소속기관
1,879	265	1,614

'16년 세출예산 현황

□ 예산 총괄



□ 사업별 집행현황

(’16. 8. 31. 현재, 억 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
총계	2,044	1,337	65.4
○ 인건비	1,172	740	63.1
○ 기본경비	107	68	63.6
○ 사업비	765	529	69.2
- 병역자원 선발	89	59	66.3
- 병역자원 충원	20	12	60.0
- 보충역복무 지원	116	69	59.5
- 병무행정 지원	540	389	72.0

병역의무자 관리현황

(’16. 8. 31.현재)

총 관리현황

783.7만명

(단위 : 만명)

징·소집대상
(114.9만명)

제1국민역 (18세)	징병검사대상		현역대상		사 후 보 생 관 생 등	사회복무대상	
	19세	20세 이상	입영 대상	재학 연기		소집 대상	재학 연기
33.7	9.3	11.5	24.0	25.8	1.9	4.6	4.1

(단위 : 만명)

보충역
복무자 등
(8.5만명)

사회복무 요원 등	산업기능 요원 등	전문연구 요원	공중보건의 등
5.1	2.3	0.6	0.5

(단위 : 만명)

병력동원
대 상
(660.3만명)

예 비 군	예비군 추가편성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
290.5	312.6	57.2

Ⅱ. 주요업무 현황

- 징 병 검 사
- 현 역 병 입 영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산업지원인력 관리
- 병력동원훈련 소집

징병검사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과 병역처분으로 우수인력 선발

□ 실적

(’16. 8. 31.현재, 명)

연간계획	검사인원	진도(%)
351,377	259,020	73.7

※ 병역처분 : 현역 84.5%, 보충역 10.8%, 면제 2.2%, 재검대상 2.5%

□ 주요 추진사항

- 정밀 신체검사로 軍 복무 부적격자 사전 선별
 - 신체검사 인원이 많은 과목에 징병전담의사 복수배치(’16~’18년)
 - ※ 정신건강의학과·내과·정형외과, 30명(검사반별 3명)
 -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新인성검사 도구 개선 추진(’17년 시행)
- 병역처분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신경·정신과 약물 위탁검사 추가(7종 → 14종)
 - 의료분야 종사자 음부즈맨 참여 확대(85% → 89%)
- 신세대 감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나만의 홈페이지, 징병검사 과정 실시간 안내 등 홈서비스 확대
 - 징병검사 시 발견된 질병의 치료정보 제공 추진(’16. 10월 시행)

현역병 입영

軍 소요 적정 충원으로 전력 증강 기여

□ 실 적

(‘16. 8. 31.현재, 명)

연간계획	입 영	진 도(%)
265,351	179,438	67.6

※ 징·모집 비율 : 징집 122,208명(46.1%), 모집 143,143명(53.9%)

□ 주요 추진사항

- 현역병 충원 체계 개선으로 군 소요 적정 충원
 - 전국단위 징집체계 구축, 부대별/적성별 충원을 제고
 - 「내 점수 미리 알아보기」 시스템 운영, 모집병 합격 예측정보 제공
-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운영 활성화
 - 고교·직업훈련원 등 현장 방문설명회 개최, 모집인원 확대
 - ※ (‘15년) 1,000명 → (‘16년) 1,300명 → (‘17년) 1,800명 → (‘18년) 2,500명
 -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등 전역자 취업 적극 지원
- 군 소요 증원 등을 통한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
 - 군 소요 2만명 증원, 산업기능요원 확대 및 검사규칙 개정
 -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 입영선호시기 경쟁률 완화 방안 강구
 - ※ 적기 복학을 위한 ‘관련부처 통합 가이드북’ 발간, 복무 중 학점인정 확대 추진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의 공익성 · 효율성 제고

□ 실 적

(’16. 8. 31.현재, 명)

연간계획	입 영	진 도(%)
27,322	21,523	78.8

※ 복무인원 : 51,270명(10,505개 기관)

□ 주요 추진사항

- 사회복지분야 우선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향상 기여
 - 사회복지분야 배정인원 증원(’16년 11,209명 → ’17년 12,482명)
 - 사회복지시설 복무자 인센티브 확대 추진(특별휴가 5일 → 10일 등)
- 맞춤형 교육 및 현장중심 복무관리
 - 교육운영 내실화, 정신질환 등 복무부실 우려자 先 교육 後 배치
 - 수형자 등 복무부실 우려자 중점관리
 - 복무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복무지도관 복무관리 역량 제고
- 자긍심 제고로 성실복무 분위기 확산
 - 우수사례 발굴 · 시상, 사회복무요원 헌장 · 사회복무歌 제정
 - 고충상담,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등 안정적 복무환경 조성

산업지원인력 관리

합리적 인원배정과 복무관리 강화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실 적

(’16. 8. 31.현재, 명)

연간계획	편 입	진 도(%)
18,500	10,541	57.0

※ 복무인원 : 29,423명(산업기능요원 20,199/ 전문연구요원 5,955/ 승선근무예비역 3,269)

□ 주요 추진사항

○ 중소·중견기업 위주 인력지원

- 산업지원 인력 증원(’15년 12,000명 → ’16년 18,500명)
- 중견기업까지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편입 지원

○ 편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합동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9회)
- 「산업지원 병역일터」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 엄정한 복무관리로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

- 복무부실 발생 분야/업체 위주 집중 실태조사
- 실태조사 업무 전산화 등 복무관리 인프라 조성

병력동원훈련 소집

동원훈련 내실화 및 집행절차 숙달로 전시대비 동원태세 확립

□ 실 적

(’16. 8. 31.현재, 명)

연간계획	입 영	진 도(%)
392,639	299,473	76.3

※ 훈련기간 : ’16. 3. 2. ~ 11. 27.(9개월간)

□ 주요 추진사항

- 실효성 있는 동원훈련 여건 조성
 - 군 소요 특기자 지정 향상 등 동원대상자 정예화
 - 훈련 참가자 권익보장 등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

- 동원훈련 수송병력 안전사고 예방
 - 운전자 음주측정 및 안전교육 실시, 안전통제관 운영
 - 병력 수송차량 이동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유사 시 대비 유관기관 협력체제 유지
 - 관·군 합동 동원연습으로 전시계획 점검·보완
 - 지방자치단체 병무직원 교육 등 전시임무 수행능력 배양

Ⅲ. 현 안 사 항

- 고위공직자 등 병적관리 강화
-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제도 시행
- 사회복지무요원 전문교육센터 개원·운영
- 국적변경자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 징병검사 시 잠복결핵 감염검사 추진
-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
- 국민중심·현장중심 정책 강화
- 병역법 개정

고위공직자 등 병적관리 강화

병역이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으로 국민의 부정적 인식 해소

□ 추진배경

-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상존
- 병역이행과정 중점관리, 투명·공정한 병역문화 정착

□ 추진내용

- 고위공직자 및 그 자녀의 병적관리 근거 마련
 - 병역법(제77조의4) 신설('15.12.15.공포, '16. 6.16.시행)
- 하위법령 제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16. 6월)
 - 업무처리 기준·절차·방법 등 운영기반 마련
 - 징병검사, 보충역 복무 등 병역이행과정 집중관리
 - ※ 병역기피·면탈 여부 조사 및 병역이행 현황 분석 등

□ 향후계획

-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관리 대상 확대 추진

현 행	확 대
1급 이상 공직자, 그 자녀	· 4급 이상 공직자, 그 자녀 · 연예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체육선수(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

※ 병역법 개정안 국회제출('16. 11월중)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제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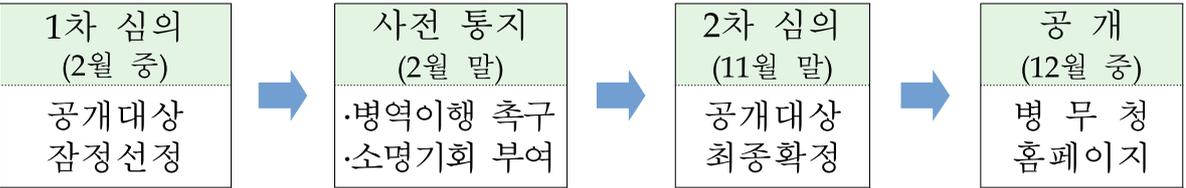
병역기피자 발생 예방 및 성실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

□ 추진배경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시행('15. 7. 1.), 성실 병역이행 유도

□ 추진내용

- 병역기피자 공개절차



- 병역기피자 발생 : 600명('15. 7. 1.~'15. 12. 31.)

- 지방청별 심의위원회 개최, 잠정 공개대상 선정 (단위 : 명)

계	현역입영 기피	사회복무 기피	국외불법체류	징병검사 기피
547	427	82	27	11

※ 공개 제외(53명) : 기피 후 병역이 면제되거나, 군에 입영한 경우 등

□ 향후 계획

- 잠정 공개대상자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16. 11월까지)
 - 공정·투명한 제도운영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
- 위원회 심의(2차)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 확정, 공개('16. 12월 중)

사회복무요원 전문교육센터 개원 · 운영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

□ 추진배경

- '16. 3월 사회복무연수센터 개원으로 교육운영 인프라 구축
- 교육프로그램 지속적 개선 · 보완책 마련으로 교육효과 제고

□ 교육개요

교육 형태	합숙(소양 4박 5일/보수 2박 3일)
인원/강사	연 3만여 명(연 35주), 전문강사(183명)
교육 과정	소양교육, 보수교육(나래과정, 소시오드라마)
교육 내용	복무규정, 국가안보, 갈등해결, 재난안전 등 12개 과목

□ 교육운영 내실화

-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강사 확보
 - 전문 임기제 강사 확보 추진, 우수 내부 강사 발굴
-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 분석 · 발전
 - 신세대 교육생 특성 고려, 참여(소통 · 발표) 프로그램 개발
-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
 - 안전과 관련 유관기관 협약, 안전사고 긴급대응체계 마련

□ 향후계획

- 강사 · 운영자 전문성 함양 및 맞춤형 교육, 성실복무 유도
- 교육생 피드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만족도 제고

국적변경자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

국적이탈·상실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로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

□ 추진배경

- 국적변경 등 병역회피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심화

□ 추진내용

- 외국의 입법례 및 위헌소지 등 법리적 검토
 - 주요국가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헌법 및 국제법 위반소지 등 검토
- 국적·출입국 제도 등을 통한 다각적인 제재방안 도출
 - 국적회복 제한, 국내체류·경제활동 및 공직임용 제한 등
 - ※ 정책연구용역(한국입법학회) 완료, 국방위원실 방문 설명('16. 9월)
- 연구내용 관련부처(법무부 등) 공유 및 의견조회
 - 제재방안 법제화 가능성 등 부처 업무협의

□ 향후계획

- 관련부처 의견 등 종합, 국회 보고('16. 11월)
- 관련부처 협의 결과 반영, 입법추진('16. 11월 ~)

징병검사 시 잠복결핵 감염검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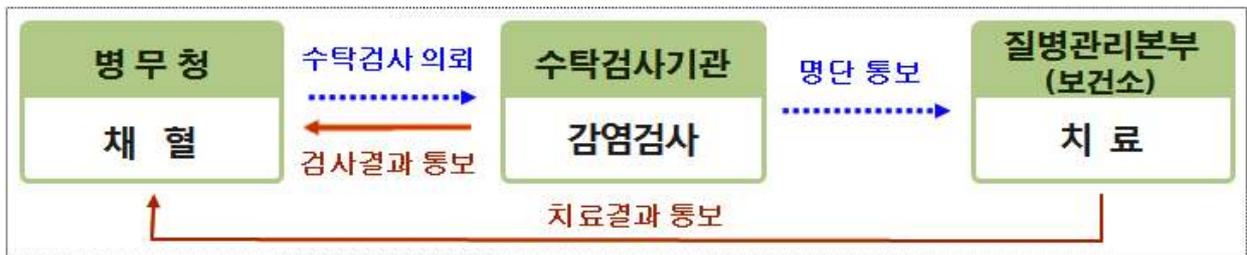
징병검사대상자 결핵검사로 국민건강 제고 및 우수인력 선발

□ 추진배경

- 결핵 발생률 OECD 가입국 최고 수준
 - 軍 부대, 학교, 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결핵 수시 발생
- 정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발병 後 치료 → 발병 前 예방)

□ 추진내용

-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의결(16. 3. 24.)
 - 입영 前 징병검사 시 잠복결핵검사 추가 등
- 징병검사 시 잠복결핵 외부 위탁검사 예산 확보(17년 137억원)



□ 향후계획

- 유관기관 협업 강화(질병관리본부, 행정자치부 등)
 - 치료안내 등 집중관리 및 전문 검사인력 증원 협의
- 징병검사 시 전원검사,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근거 마련
 - 검사결과 양성자 관리, 관련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방안 등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존중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추진배경

- 병역의무 성실 이행자 자긍심 고취 지원방안 지속강구
- 국민 참여·공감을 통한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

□ 추진내용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활성화
 - 병역명문가 발굴(누계) : 3,431가문 16,885명
 - 국·공립시설 등 이용료 할인·면제(658개 시설), 조례제정(51개 지자체)
- 民·官·軍이 함께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 개최(연 43회)
 - 병무청 주관 공연,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 입영 축하행사
 - 주변 관광지 시티투어, 병무상담 부스 운영
- 국민 참여·공감 프로그램 운영
 - 나라사랑 주제,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 개최('16. 4~5월)
 - 병역이행 특별가족 찾기 행사 추진('16. 7~9월)
 -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전개('16. 9~10월) 등

□ 향후계획

- 병역명문가 자긍심 고취사업 지속 추진(안보견학 등)
- 입영문화제 가족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유관기관 협업 추진

국민중심 · 현장중심 정책 강화

국민과 함께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병역정책 추진

□ 추진방향

-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 창조 · 혁신 · 변화하는 병역정책
-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병무청

□ 추진내용

- 정밀 징병검사체계 마련 및 병역면탈 범죄 예방 · 단속
 - 징병전담의사 증원 및 종합심리검사제도 도입 추진('17년)
 - 특사경 광역단위 수사체계 도입 : 지방청(14개) → 권역별(중부권, 남부권) 단위
- 징병검사 과정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나만의 홈페이지 운영, 맞춤형 병역 및 질병 치료정보 등 제공
 - 징병검사 진행과정 수검자 가족에게 실시간 공개(스마트폰 앱 서비스)
- 사회적 소외계층 배려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고졸이하자 취업맞춤특기병 확대('15년 1,000명 → '18년 2,500명)
 - 불만족 · 고충민원 해결팀 운영, 생계곤란자 등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체계 선진화
 - 사회복지연수센터 개원 → 교육 프로그램 개선 · 강사 전문성 제고
 - 복무지도관 · 복무기관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 복무관리 역량강화

병역법 개정

병역의무자 권익 보장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내용

- 고위공직자 외 연예인·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관리
- 신체검사 보완서류 발급비용 전액 국고지원 근거 마련
- 신체검사, 군 적성분류를 위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
- 지역단위에서 전국단위로 입영일자 결정체계 개선 등

□ 향후계획

- 부처협의 / 입법예고 : '16. 9.~10월
- 법제처 심사 : '16. 10월
- 국회 제출 : '16. 11월

IV. '15년도 국정감사결과 조치사항

'15년도 국정감사결과 조치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완료	조치 중
16건	11건	5건

시정·처리 요구사항	완료여부
① 사회복지교육원 설립기간 동안 교육공백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완료
②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개선대책 및 보수교육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완료
③ 예술·체육요원의 영리활동 금지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완료
④ 심신장애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사유를 '수형자 등'과 구분하여 기록할 것	조치완료
⑤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홍보로 병역인식을 제고할 것	조치완료
⑥ 수형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	조치완료
⑦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을 재검토 할 것	조치완료
⑧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충원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 중
⑨ 산업지원인력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조치 중
⑩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체육부대 등 특기자 선발권한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할 것	조치완료
⑪ 사회복지요원 복무자 현역병 입영 근거를 마련할 것	조치 중
⑫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 중장기적 병역지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장기적으로 보고할 것	조치완료
⑬ 병역기피 목적의 국외 불법체류자 및 국적상실자 등에 대한 대책 및 추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	조치 중
⑭ 사회복지요원 복무지도관 선발 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것	조치 중
⑮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한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	조치완료
⑯ 심리검사 도구개선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현역복무 부적격자 사전선별을 강화할 것	조치완료

조치완료(11건)

① 사회복지교육원 설립기간 동안 교육공백 최소화 방안 강구

[시정 요구사항]

- 사회복지교육원 설립기간 동안 교육공백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 사회복지요원 소양교육 일정 추가 반영
 - 경인 및 대전교육센터 추가교육 실시('15. 11. 9, 160명)
- '16년 사회복지요원 교육규모 확대 운영
 - 교육기간 : 연 52주 중 38주간 교육
 - ※ 교육제외 : 14주(휴서/휴한기 10주, 공휴일 포함 4주)
 - 연간 교육계획 인원 확대
 - '15년 대비 소양 기본과정 7,540명 증원

(단위 : 명)

구분	계	소양교육		보수교육	
		기본	리더	비상	소시오
'16년	30,960	28,640	1,000	720	600
'15년	24,870	21,100	2,520	800	450
증감	6,090 ↑	7,540 ↑	1,520 ↓	80 ↓	150 ↑

- 사회복지분야 복무기관 배치 후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 先 직무교육, 後 소양교육 실시(연중)

②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개선대책 및 보수교육 확대방안 마련

[시정 요구사항]

- 사회복지요원 직무교육 개선대책 및 보수교육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직무교육 개선대책
 - 직무교육 실태 점검('15. 10. 13. ~ 11. 3.)
 - 직무교육 시기·기간, 주요 프로그램 확인, 직무교육 적정성 여부
 - 직무교육 적기·적정 운영 강조('15. 11. 20.)
 - 先 복무기관 배치 후 직무교육 조기 실시
 - 표준화 교육프로그램 제작·운영, 직무교육 적정성 평가
 - '16년 사회복지요원 교육운영계획 수립('16. 2. 23.)
 - 복무기관 평가 시 직무교육 충실도 반영
 - 직무교육 이행여부 실태점검 철저, 복무기관 협력 강화
- 보수교육 확대방안
 - 사회복지요원연수센터 개원 후 소시오드라마 등 보수교육 확대
(15년) 1,250명 → ('16년) 1,320명 → ('17년) 1,520명
 - 나래과정 신설·자체운영 등 보수교육 자체 추진기반 구축

③ 예술·체육요원의 영리활동 금지방안 강구

[시정 요구사항]

- 예술·체육요원의 영리활동 금지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결과]

- 예술·체육요원 복무자 대상 소득 현황 파악('15. 9월)
 - ※ 대다수 예술요원 및 비인기종목 체육요원의 소득수준은 일반인 평균소득 이하

○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 업무협약('15. 10. ~ 11월)

- 일자/기관 : '15. 10. 23, 11. 5./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 주요내용 : 해당분야 종사 이외 영리활동 금지방안 모색 등

○ 영리활동 금지방안 검토 결과 → 현실적 제한 곤란

일반적인 영리활동 제한 (해당분야 종사 포함)	광고 출연 등 특정 영리활동 제한 (해당분야 종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종사가 직업수행과 연계, 제한 시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 * 선수 연봉, 국립극단 급여 등 • 복무 특성상 제한 곤란 * 先 국위선양자(국가기여)에 사후적으로 해당분야 종사 의무 부여 * 복무와 동시 국가기여 의무가 발생하는 일반 병역의무자와 복무특성이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영리활동 범위 선정이나, 이면 계약 시 영리활동 확인 곤란 • 대다수 예술요원 개별 활동자는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종사분야 이외의 영리활동 불가피 • 해외 광고 출연 제한으로 국위선양 기회 상실 등 부정적 요인 증가

※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 위해 승부조작 외 일반범죄자 편입 취소 법제화(병역법 개정) 추진 중

④ 심신장애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사유 '수형자 등'과 구분 기록

[시정 요구사항]

- 심신장애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사유를 '수형자 등'과 구분하여 기록할 것

[조치결과]

- 병역처분변경사유 구분 병역법 개정(법률 제13778호, '16. 1.19.)
- 수형사유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 등 기타 사유로 구분

⑤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홍보로 병역인식 제고

[시정 요구사항]

-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홍보로 병역인식을 제고할 것

[조치결과]

- 기피자 공개 단계별로 연중 지속적인 홍보 실시
 - 제도 도입, 잠정공개대상 선정, 소명서 제출 등 보도(KBS 등 50여회)
- 기피자 공개제도 기획보도를 통한 공감대 확산
 - 주요 신문사 활용, 기획 보도 및 기고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기획보도(3회), 서울경제신문 등 기고(병무청장 등 5회)
 - 그 외, 일간지 카드뉴스 및 병무지 등 월간지 활용 홍보 실시
 - ※ 청춘예찬(병무지), 카드뉴스(동아), 리더스월드 등 활용 홍보(10여회)
 - ☞ 향후,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명단공개 시 홍보 예정(12월 중)

⑥ 수형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 완화 검토

[시정 요구사항]

- 수형자에 대한 병역처분기준 완화를 검토할 것

[조치결과]

- 경미한 범법자 현역입영 배제 시 형평성 문제,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 등 우려, 완화는 곤란
 - 수형사유 병역처분기준 완화를 병역이행 형평성 저하, 특혜로 인식하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 있음
 - ※ '14년 일반국민(1,092명) 설문조사 결과 : 기준 완화 찬성 49.9%, 반대 50.1%
 - 현역(상근) 입영자의 대부분이 사기/절도 등 경미한 범법자
 - 입영자 대부분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고 그 대상인원도 소수로 입영적체 해소 효과 미미
 - ※ 최근 3년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 현역병(상근)입영 현황(집행유예 이상)
(단위 : 명)

구분	'15년	'14년	'13년
계	553	440	439
현역병	46	51	48
상근예비역	507	389	391

⑦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재검토

[시정 요구사항]

-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을 재검토 할 것

[조치결과]

- 병역처분기준 변경('16. 4. 11.부)
 - 고퇴이하 신체등위 1~3급자는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⑩ 체육부대 등 특기자 선발권한을 병무청으로 일원화

[시정 요구사항]

-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하여 체육부대 등 특기자 선발권한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할 것

[조치결과]

- (육군) 신호정보·군사정보·S/W개발병 선발권한 병무청 일원화('16.11월 접수자부터)
- (국방부) '체육부대 선수' 선발의 개별 종목 전문성 부족으로 선발 권한 병무청 이관은 곤란. 다만, 선수 선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병무청 직원을 「선수선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 부대관리훈령 제411조 개정(국방부훈령 제1932호 '16. 7. 1.)

⑫ 중·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계획 수립,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시정 요구사항]

-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 중·장기적 병역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

[조치결과]

- KIDA의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결과 의원실 방문 설명 등('15. 9. 25.)
 - 향후,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재판단 시 국방부와 협의하여 보고

⑮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국방부 등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시정 요구사항]

-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를 위한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것

[조치결과]

- 당정협의(국방부·기획재정부 등)를 통하여 군 소요를 증원하는 등 현역병 입영적체 해소대책 추진, 입영적체는 '17년 이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측
- 유관기관 방문·설명 및 당정 협의('15. 10월)
 - ※ 군소요 총 2만명 증원('16년, '17년 각 1만명)
- 고퇴이하자 병역처분기준 조정, 징병신체검사규칙 강화 등

⑯ 심리검사 도구개선 등 전문성 강화로 현역복무 부적격자 사전선별 강화

[시정 요구사항]

- 심리검사 도구개선 등 전문성을 강화하여 현역복무 부적격자 사전선별을 강화할 것

[조치결과]

- 군복무 부적합·부적응 관련 평가영역 확대 등 인성검사 개선
 - 사고·부적응 관련 위험 요인 및 성격특성 파악 강화('17. 1월 도입)
- 심리취약자로 치료 필요자(7급) 경과관리 제도 도입
 - 2차 심리검사결과 '정밀관찰자'는 임상심리사가 주기적 경과관리
 - 심리검사결과 가족통보(본인동의)를 통한 치료 유도
- 최신검사도구 학습을 위한 임상심리사 민간병원 연수 및 직무교육
- 정밀검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복수배치
 - '16년 5개반, '17년 7개반, '18년 10개반

조치 중(5건)

⑧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충원을 제고방안 마련

[시정 요구사항]

-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충원을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이공계 대학교 방문 설명회 등 홍보 강화
 - 중소기업청·산업기술진흥협회 합동, 제도 설명회('16년 6회)
(이공계 대학생 3~4학년·대학원생 위주 실시)
-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지속 확대(중소기업청 소관)
 - '14년 2개 → '15년 14개 → '16년 23개
 - ☞ 중소기업청의 「계약학과사업*」 연계 등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 * 중소기업 취업 전제로 대학원생 등록금 지원(중소기업청) → 학위 취득 후 전문연구요원 편입(병무청)

[향후계획]

- 우수업체 위주 지정업체 선정('16. 10월)
 -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수상, R&D 성과분석 우수기업 등 우선 선정

※ 현황

구 분	계	비 지정업체		기존 지정업체	
			%		%
계	385	352	91.4	33	8.6
기술혁신대전수상업체	274	270	98.5	4	1.5
R&D 성과분석 우수	111	82	73.9	29	26.1

- 유관기관 협업, 1:1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제공(연중)

⑨ 산업지원인력제도 폐지 검토

[시정 요구사항]

- 산업지원인력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

[조치결과]

- 국방부 주관, 대체복무제도 운영방안 자체 검토
 -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기반으로 조정 범위·문제점
 - 국방부 - 병무청 간 감축·조정방안 토의
 - ※ 2회('15. 9월, '16. 1월)
- 관계부처·기관 업무협약('16. 1.~ 9월)

[향후계획]

- 관계부처·기관, 학계 등 폭넓은 의견수렴('16년)
 - 감축·조정의 우선 순위·규모·시기 등 협의
 - 전문기술인력의 군내 활용 방안 등 보완대책 강구
- 대체복무제도 운영(안) 마련('16년)
 - 의견수렴 결과 및 다양한 고려 요소 종합적 판단, 합리적 방안 도출

주요 고려요소

-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공정성 측면 고려
- 국방태세 유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인력충원 가능성
-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
- 우수 전문인력의 활용 및 국가인재 육성전략 등

- 대체복무제도 감축·조정 계획 발표('16년)
 - 국방부 감축·조정 계획에 따라 세부 운영 계획 마련

⑪ 사회복지요원 복무자 현역병 입영 근거 마련

[시정 요구사항]

- 사회복지요원 복무자 현역병 입영 근거를 마련할 것

[조치결과]

- 사회복지요원 복무자의 현역병 입영 근거 마련(입법예고중)
 - 병역법 제65조제8항 개정 추진
 - 사회복지요원 복무 중인자도 병역처분변경원 출원대상에 포함

[향후계획]

- 병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16. 11월~)

⑬ 병역기피 목적 국외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대책 및 추적관리시스템 마련

[시정 요구사항]

- 병역기피 목적의 국외 불법체류자 및 국적상실자 등에 대한 대책 및 추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

[조치결과]

- 병역기피 목적의 국외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규정 신설('16. 1. 19.)
 - 병역법 제94조제1항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 단순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 3년 이하 징역
- 국적변경 등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방안 정책연구용역 추진('16. 2. ~8월)
 - 미국·독일 등 주요국가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위헌 및 국제법 위반소지 등 법리적 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입법안 포함) 제시
- 정책연구용역결과 제재방안 국방위원실 방문 설명('16. 9. 20.~9. 21.)
 - 국적회복·재외동포체류자격·취업비자 제한, 공직임용 배제

[향후계획]

- 관련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입법 추진('16. 11월~)

⑭ 사회복지요원 복무지도관 선발 시 전문자격증 소지자 채용

[시정 요구사항]

- 사회복지요원 복무지도관 선발 시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것

[조치결과]

- 임기제 복무지도관 채용('15. 12. 28.)
 - 채용인원 : 1명(결원에 따른 충원) ☞ 상담관련 자격증 3개 보유
 - 채용기준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채용
- 무기계약직 복무지도관 채용('16. 2.1, 3.2, 5.23, 7.1.)
 - 채용인원 : 4명(결원에 따른 충원)
 - 채용기준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채용
-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16. 2. 24.)
 - 복무지도관 채용 시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대 채용

[향후계획]

- '18년 복무지도관 증원소요 제기('17. 6월)
- 복무지도관 증원소요 반영 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V. 맺 음 말

우리 병무청 직원 모두는
병역의무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국가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투명한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자랑스럽고
존중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는

「신 병역문화 창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